

2003. 9. 19 (금) 10 : 00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심사결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동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7일과 18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같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미래 지향적 행정 환경에 대응성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퇴, 보강분야에 대해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보건진료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변환경의 여건변화로 일부 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김정희 의원 외 1인 으로부터 거창사건 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거창사건 묘역관리사업소 직제를 삭제하고, 거창사건담당업무를 행정과에 두도록 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필요없는 부분이므로 삭제하고, 별표 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거창군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삭제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면서 환경녹지과의 주무담당을 산림분야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표준정원제 실시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와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하여 인력을 집행기관은 555명을 59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총 60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김정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소장 5급이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이 되지 않아 집행부의 정원 593명을 592명으로 1명 감하여 총 정원을 606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축법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5,000원으로 인상,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 연장,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하고,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돼지 도축세율을 1000분의 5로 한시적 인하,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자주 수정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거창군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입금 징수 포상금을 종전

채납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내용을 과년도 채납액 중 채납연도 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지급 한도액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채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